

# 주요 업무 보고

2025. 12.

디자인정책관

# 디자인정책관

①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

---

② 옥외광고물 민원현황 및 개선 검토보고

---

# 1

##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

도시경관담당관 : 정삼모 ☎2133-1920    광고물팀장 : 정성중 ☎1939    담당 : 김혜경 ☎1934

### □ 추진 배경

-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, 지역간 형평성 제고
- 자치구 및 산업계의 현실적 요구와 규제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의 균형 도모

### □ 추진내용

#### ① (59호) 옥외광고물 적색류, 흑색류 사용제한 금지

-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조 제3항 제4호 삭제('25.5.19)
- 간판 바탕 색채를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(50%) 이내 제한 규정 삭제
- 소상공인들이 간판 디자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로 매출 증대

※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음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산업계의 규제개선 요청 수용

\* 우리시를 포함한 5개 시도는 규제조항 삭제, 12개 시·도는 규제 유지

#### ② (60호) 모든 자치구의 가로영상문화시설에 대해 광고물 표시 허용

-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 개정('25.5.19)
-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가로영상문화시설의 단서 조항 변경(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 →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)
- 강남구에 한정된 규제를 삭제하여,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

※ 서초구로부터 미디어폴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정비 요청 수용

### ③ (61호)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

-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7조 제2항 제2호 삭제('25.5.19)
- 창문을 이용한 전광류(동영상 변화가 없는) 사용 광고물을 '상업지역 건물 1층'으로 제한한 규정 삭제
- 주거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소에 전광류로 부동산 매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,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원

※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(부동산 온·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) 성과에 따른 조례 정비

### ④ (74호) 소상공인을 위한 입간판 규제 완화

-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9조2 제1항 제6호 개정('25.5.19)
- 입간판 재료 변경(비철(非鐵)금속 → 금속 등)
- 소상공인들이 95%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을 합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정비

※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로 규제완화 건의 수용

### ⑤ (157호)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

-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 개정('26년 상반기)
- 쌍둥이형 건축물은 자치구 옥외광고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 동별로 간판 설치 가능
- 쌍둥이형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으나, 현 조례 적용시 건축물대장 상 '하나의 건물'로 간주돼 3면만 간판 설치가 가능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의 정당한 표식권 강화

※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로 규제완화 건의 수용

## 2

# 옥외광고물 민원현황 및 개선 검토보고

도시경관담당관 : 정삼모 ☎2133-1920 광고물팀장 : 정성중 ☎1939 담당 : 김혜경 ☎1934

## □ 민원현황 및 검토보고

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접수민원(4건)

### ① 가로형 간판 층수 제한 완화

- 관련규정 :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
- 문제점 : 현재 가로형 간판은 건물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6층 이상의 업소는 상대적으로 업소를 홍보하는데 제약이 따름
- 건의사항 : 가로형 간판의 설치에 대하여 건물 5층 이하를 7층 이하까지로 완화하여 주기 바람
- 검토의견

- ▶ 가로형 간판 층수 완화는 도시경관 및 안전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필요
- ▶ 자치구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례 개정 여부 검토하여 추진

### ② 입체형 간판 세로 크기 확대

- 관련규정 :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4조 제1항 제6호
- 문제점 : 현재 입체형간판의 세로 크기가 45센티미터 이내인데 판류형간판의 80센티미터에 비해 너무 작고 위층으로 갈수록 더 작아 보이는 문제가 있음
- 건의사항 : 입체형간판의 세로 크기를 70센티미터로 완화하여 주기 바람
- 검토의견

- ▶ 시인성 확보 필요성은 인정되나, 도시경관 및 안전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필요
- ▶ 자치구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례 개정 여부 검토하여 추진

### ③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수정 보완

- 관련규정 : 서울시고시 제2017-490호(특정구역에서의 표시제한 사항)
- 문 제 점 : 디지털 광고물 설치의 예외 규정의 완화가 필요
- 건의사항
  -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,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의 예외인 ‘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’ 를 ‘왕복 8차로 이상 또는 (대로 2류 30m 이상)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’ 로 수정하여 완화
- 검토의견

- ▶ 예외 규정에 ‘대로 2류 30m 이상’을 추가할 경우, 표시제한을 받는 특정구역 중 50%(155/309)가 제외되어 고시 본연의 의미(디지털 광고물 난립 예방)가 퇴색
- ▶ 다만, 현재 본 고시 변경 중(행정예고 완료)에 있으며, 변경 내용 중 예외 규정 변경(왕복 8차로 이상 → 도로 폭 40m\* 이상)도 포함

\*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광로 이상(40m) 준용

### ④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개정 건의로 설치 허가 절차 간소화

- 관련규정 :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
- 문 제 점 : 수십 년간 면제해 오던 규제가 최근 강화되어, 광고물 허가 외에 공작물 축조 신고까지 이중 규제가 발생
- 건의사항 : 이미 옥외광고물 심의·허가를 거친 시설에 대해 공작물 신고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며, 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중 규제 개선
- 검토의견

- ▶ 법제처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·신고를 받은 광고물의 경우에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, 별도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법령해석('24.6.5.)
- ▶ 현장에서의 혼선과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, 행안부에서 ‘옥외광고물 공작물 축조신고 관련 조치방안’ 시달('25.12.1) 및 '26년 관계법령 개정 추진

서울시 응답소 접수민원(2건) ※ 정당현수막 관련

⑤ 왜곡된 내용의 현수막 제작 및 금지 요청

- 관련규정 :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
- 문 제 점 :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미관 또는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
- 건의사항 :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난립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금지광고물\*’ 내용금지의 경우 엄격한 법 적용 필요
  - \* 범죄행위, 미풍양속 위해, 청소년보호, 사행심 유발, 인권침해, 타법광고 금지 등
- 검토의견

▶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(내용금지)의 구체적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('25.11.18)하여 자치구에서 시행중

⑥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적극 대응방안 마련

- 관련규정 : 옥외광고물법 제8조
- 문 제 점 : 최근 상대 정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게시난립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국민정서에 반하는 혼란 야기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
- 건의사항 : 정당현수막 표시·설치 기준\* 등 위반 정당현수막에 대해 강제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법규정 마련
  - \* 읍·면·동별 설치 개수(2개), 설치 규격(10㎡이내), 기간(15일) 등
- 검토의견

▶ 불법 현수막 단속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어 정당현수막의 위법여부는 자치구에서 판단하며, 통상적인 정당활동 해당여부는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

▶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(내용금지)의 구체적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('25.11.18)하여 자치구에서 시행중